의학전문대학원기숙사운영세칙

- 제1조(목적)이 세칙은 기숙사의 사생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의무)① 사생은 본 세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 사생의 1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, 혹은 의무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기숙사에 입실을 불허한다.
 - 가. 기숙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및 유지
 - 나. 배정된 기숙사 실내의 도난, 화재 방지 및 유지 관리
 - 다.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라. 각종 점검과 보수 · 공사 시 협조
 - 마. 취사 및 세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
 - 바. 화재 시 응급대치를 위하여 소화전과 소화기의 위치 숙지
 - 사. 청소의 책임을 지며,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
- 제3조(입·퇴사)①입사방법은 기숙사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에서 결정하며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입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복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입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입사신청 후 입사를 포기할 경우 입사신청 포기서를 추가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퇴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퇴사예정 15일 전까지 퇴사원을 제출하여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4조(관리자)기숙사 및 사생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사감으로 지정하고, 사생대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- **제5조**(사실배정)사실은 사감과 사생대표가 협의하여 배정하며, 일단 배정된 사실은 사전에 사감의 허가 없이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- **제6조**(외부인의 출입 및 제한)사생은 외부인을 사내에 대동 입실시킬 수 없다. 다만, 사전에 사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사내에서 면회할 수 있다.
- 제7조(공고 및 게시)

- 1.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2.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72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, 숙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는 사생이책임진다.
- 3. 사생이 사내에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가를 받아 게시하여야 하며,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.
- 제8조(외박신고)사생은 귀향 또는 외박 등으로 기숙사에 숙박하지 않을 경우 관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우편물수취)사생의 우편물은 본인이 수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, 관리실에서 수취한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, 확인 후수령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상담)사생은 기숙사 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감 및 상담 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1조(변상)사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 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납부 및 환불)①기숙사비는 전기료·상하수도료·일상 용품비·시설개 보수비·관리인건비등을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시한다.
 - ②기숙사비 매학기별로 납부.(중도 입사자는 잔여 개월 수를 계산하여 납부 하다.)
 - ③자진퇴사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환불하며, 퇴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 - 가. 일반적인 사유시: 사용기간이 5달 중 2달 미만인 경우
 - 나. 군입대·질병에 의한 사유시: 사용기간이 1/2 미만인 경우
 - 다. "가"호 내지 "나"호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불할 수 있으며, 잔여범위에 한해서 환불한다, 단, 범위 초과시에는 환불하지 않는다.
 - 라. 사용기간은 1일을 거주하여도 1달 사용한 것으로 간주 한다.
 - 마. 중도 입사자의 경우는 "가"호내지 "나"호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환불하지 않는다.
 - 바. 환불사유 발생 시에는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입사신청포기로 인한 보증금은 환불하지 아니하며 보증금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제13조(기숙사비 면제)제4조에 의거 기숙사 사감 및 사생대표로 선출된 자는 기숙사비를 면제 한다.

- 제14조(금지행위)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 - 1. 사내에서 절도, 도박, 음주, 폭행, 소란행위 등
 - 2. 전열기 사용 및 위험물 반입행위 등
 - 3. 시설물 임의이동, 변형, 손상, 파괴행위 등
 - 4. 낙서, 부착물 첨부, 광고물 무단 전시, 불온 유인물 등 배포행위
 - 5. 외부인을 사내에 숙박시키거나, 사감의 허락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
 - 6. 타인 명의 우편물 수취개봉 행위
 - 7. 실내에서 흡연행위
 - 8. 그 외 벌점기준표의 벌점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
 - 9. 기타 사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- 제15조(벌칙)①사감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강제퇴사 및 사생선발 등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으며, 벌점 기준표는 별첨1과 같다.
 - ②사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처분 할 수 있다.
 - 1. 제14조에 열거한 금지행위를 한자
 - 2.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
 - 3. 벌점이 10점인 항목에 해당할 경우 영구퇴사
 - 4. 자퇴 및 휴학을 한 경우
 - 5.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
 - 6. 학교로부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
 - ③벌점의 감경: 매 학기별 벌점의 누적점수는 1년경과 후에는 그 누적점수의 50%를 감경한다. 다만, 소수점이하의 수는 올림으로 하여 감경한다.
- 제16조(입사불허)①강제퇴사를 당한자는 입사를 불허한다.
 - ②학사일정 종료에 따른 퇴사시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사를 불허한다.
 - 1. 퇴사 시 사실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자
 - 2. 퇴사기간 내에 사감의 허락 없이 퇴사하지 않는 자 및 개인 짐을 반출하지 않는 자
 - 3. 퇴사 시 방 청소를 불결하게 한 자

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2-3-18~4 제2편 학 칙

(별첨1)

벌점 기준표

분 류	내 용	벌점
사내기물 파괴	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	4
	술에 취해 폭행을 범한 행위	10
	술에 취하여 기물을 파손한 행위	10
음주 소란 행위	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	8
	사내에서 음주하는 행위	3
사내절도 및	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	10
도박행위	사내에서 도박성 행위를 하는 경우 (금전관계가 있을 경우)	5
취사행위	취사실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하는 행위	5
비사생 출입	외부인을 사내에서 숙박시키는 행위	5
전열기 및 위험물	전열기 및 인화물을 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(헤어드라이, 커피포트, 토스터, 냉장고, 선풍기는 제외)	6
소 그l. 체 히	고성 방가 행위	3
소란행위	음향기기, 악기를 크게 사용한 행위	2
	시설물의 무단 이동 행위	5
시설물사용 및 공중도덕	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하는 행위	3
	방을 불결하게 사용하는 행위	3
지시사항 불이행	사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	10
	이성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	5
방 출입	타인의 방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	10
	사내에서의 성적 행위	10

(별지서식 제1호)

기숙사 입사원

									담	당	원 정	상
접~	수번호											
	소	속		대학(운	빌)	학과	전공	학	번			
지	성	명	(한글)		(한기	(-})		입사	경력		년도	<u> </u>
원 자	주민 번	등록				출신대학		휴대폰	:			
	주	소						전화	번호			
	성	명			학생	과의관계		직업(근	근무처)			
보호자	주	소						전화	번호			
	긴 연 락	급 † 처						전화	번호			
7:	약보증	금					원	확	인			

20___학년도 __학기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서류 : 1. 사진 3매 (3×4 또는 4×5cm), 주민등록초본 1부.

 20 년 월 일
 본 인:
 인

 보호자:
 인

(별지서식 제2호)

기숙사 퇴사원

											1	담 당	원	장	-
소	속		대호	학(원)			ヹ	-		<u></u>	학년	<u></u> 학	<u> </u>		
정	명	(한글) (한자)				생년 월일		년 (만		일생 세)		성별	남(여()
주	소														
사실병	번호							휴대	폰)						
퇴 년 월	사 일		20	년	٤	월	일								
퇴사시	나유														
		종 5	7		확	인			종	목			확	ę	<u>-1</u>
1. 납 ^및	부금						3.	열쇠							
2. 집기	기 (초 옷	백상, 의 장, 책정	자, 침대 상 등)	귀,			4.	기타							

본인은 상기사유에 의하여 퇴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본 인: 인 보호자: 인

(별지서식 제3호)

서 약 서

학 년:

학 번: 성명:

호 실: 생년월일:

본인은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기숙사에 입사함에 있어 질서있는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숙사 세칙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다짐 하며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.

- 1. 관리비는 수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.
- 2. 책정된 기숙사 비용 항목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3. 사내 세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.
- 4. 외부인 동반 입실 및 숙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등의 처벌을 감수한다.
- 5. 기숙사내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.
- 6. 사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생활을 하지 않는다.

20 년 월 일

서 약 자 : 인

보호자: 인

(별지서식 제4호)

기숙사비 환불 요청서

,	성 명:				
7	학 과:				
7	학 번:				
	주민번호 :				
;	전화번호 :		휴대폰 :		
			., ., _		
,	상기 본인은 가천 ¹	대하교 이하저무다	l하워 기수사	세칠에 이거	하여 미사용하
	기숙사비를 환불하			. 11 11 11 21/1	911100
,			-1.		
	1 E) 1) 6) ·				
	1. 퇴 사 일 :				
	2. 퇴사사유 :				
	3. 환불방법 :	금융기관 무통장	입금		
	4. 입금계좌 :	<u></u> 은 ठ	행		
		예금주:	(반드	트시 학생명이	거야 합니다.)
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
부	임 : 본인 통장시	-보 1브			
E	B • C C O O **)	L 11.			
		20 .			
		20 .	• •	본 인:	୍ର
					_
				보호자 :	인

\ 2	(별ス	서	식	제	5호)
----------------	-----	---	---	---	-----

기숙사입사신청 포기서

학	년:	
학	번 :	성 명 :
호	실:	
생년월	일:	

본인은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기숙사에 입사를 신청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기숙사 입사를 포기하고자 합니다.

포기사유:

20 년 월 일

지원자: 인